

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268 |
|------|-----|

1. 제안경위

-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 확대와 사회참여를 요구하는 추세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03. 5. 13~6. 1 입법예고를 거쳐 2003. 6. 11.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2003. 6. 13. 회부됨

2. 개정이유

- 여성발전센터를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여성 사회교육 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지원
-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여성발전센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강료 인상
-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범위를 모든 여성발전센터로 확대

3. 검토의견

- 전문 직업교육 활성화 관련(동 개정조례안 제3조,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, 제6조 제5항, 제14조 제2항)
 -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요구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서울시의 정책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,
 - 기술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,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직업교육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취업 가능성성이 높은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음
- 시설 이용우대 관련(동 개정조례안 제6조)
 - 이용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,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추가한 것은 취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계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나,
 -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전문 교육과정이나 중·고급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단지 초빙강사에 따라 연동되는 수강료의 차이로 이를 나누는 점을 볼 때, 단서조항을 두어 전문 교육과정 등에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이용우대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수요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단서조항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,
 - 또한, 향후 조례에서 초급·중급·고급 직업 교육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
- 사용료 등 부과징수 및 면제·감면 관련(동 개정조례안 제12조, 제13조)
 - 사용료 등 개정내역을 보면, 수강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, 아동교실 사용료가 신설 되었으며, 기자재 중 프로젝터, 피아노, 음향기기, 비디오 사용료가 신설되었음(사용료 등 개정내역 참조)
 -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센터와 비슷한 직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, 한남직업전문학교 등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비, 기숙사비, 식비 등을 모두 서울시에 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발전센터에서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지

여부에 대하여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여성발전센터를 서울시에서 소유하는 한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저소득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확충 사업을 배제할 수 없으며, 동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, 실업급여 수급자를 이용우대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의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,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향후 민간위탁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음

※ 사용료 등 개정내역

| 구 分 | | 단 위 | 사용료 등 (단위 : 원)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 정 전 | 개 정 후 | | 개 정 전 | 개 정 후 |
| 수 강 료 | 일반기술 교육 | 일 반 과 정 | 1인 1월 | 10,000 12,000~ 24,000 |
| | 전문기술 교육 | 전문, 중·고급 과 정 | 1인 1월 | 20,000~ 50,000 100,000원 이내 |
| | 생활문화 | 좌 동 | 1인 1월 | 10,000 12,000~ 24,000 |
| | 수 영 | 좌 동 | 1인 1월 | 40,000 40,000 |
| | <신설> | 특별 프로그램 | 1인 1월 | - 실 비 |
| <신설> | | 아동 교실 (방과후 교실 등) | 1인 1기 | - 10,000 |
| 보 육 실 이 용 료 | 보육실 사용료 | 1인 1월 | 7,500 | 7,500 |
| 수 영 장 자 유 이 용 료 | 좌 동 | 1인 1회 | 2,500 | 2,500 |
| 주 차 장 사 용 료 | 좌 동 | 1대 1월 | 30,000 | 30,000 |
| | | 1대 1시간 | 1,000 | 1,000 |
| 시 설 사 용 료 | 강 당 | 좌 동 | 1회 1시간 | 10,000 10,000 |
| | 교육실 및 회의실 | 좌 동 | 1회 2시간 | 5,000 5,000 |
| 기 자 재 사 용 료 | 컴 퓨 터 기 기 | 좌 동 | 1인 2시간 | 1,000 1,000 |
| | 재 봉 기 | 좌 동 | 1인 2시간 | 1,000 1,000 |
| | 제 뺑 기 기 | 좌 동 | 1팀 2시간 | 10,000 10,000 |
| | <신설> | 프 로 젝 터 | 1회 3시간 | - 10,000 |
| | <신설> | 피 아 노 | 1회 3시간 | - 10,000 |
| | <신설> | 음 향 기 기 | 1회 3시간 | - 10,000 |
| | <신설> | 비 디 오 | 1회 3시간 | - 10,000 |
| 창업보육지 원시설사 용 료 | 창 업 보 육 실 | 좌 동 | m ² 당/월 | 1,000 1,000 |
| | 창 업 부 스 | 좌 동 | 부스당/월 | 10,000 10,000 |

-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제6조의 이용우대 조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및 그 직계 가족과 실업급여 수급자를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20%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시설 운영상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
- 사용료 등의 반환 및 민간위탁, 사무위임 등과 관련(동 개정조례안 제14조, 제15조, 제19조)
 -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수강료 반환 규정을 수정하고, 초급 교육과정 수료생에 대한 중·고급과정 수강에 있어 일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볼 수 있음
 - 동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서부·동부 등 2개 센터에서 5개 센터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

-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,
-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을 전후한 행정 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석자료가 없어 민간위탁의 성과(成敗)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선불리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시행착오를 누적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,
-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남부·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별정직 교사를 비롯한 여성 발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
- 사무의 위임관련 개정내용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 소장에게 시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여성발전기본법,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,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기타
 - 입법예고(2003. 5. 13 ~ 6. 1) : 시장 제출조례안 따로붙임 “입법예고 결과 요약서” 참조
 -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, 규제사무 없음

복지여성국 소관

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2003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2. 결산개요

가. 일반회계

- 세입결산은, 예산액 3,179억 원에 수납액은 예산액의 92.4%인 2,938억 5천 3백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 212억 1천 2백만원, 지방교부세 19억 6천만원, 국고보조금 2,706억 8천 1백만원임
- 세출결산은,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가액 244억 4천 4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1,705억 7천 8백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410억 1천 6백만원임.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.9%인 226억 3천 4백만원이며,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.1%인 1,069억 2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음

나.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

- 세입결산은, 예산액 2,655억 원으로 사업외수입 1,331억 2천 3백만원(일반회계 전입금 1,323억 7천 7백만원, 순세계잉여금 1천 3백만원, 잡수입 7억 3천 3백만원), 국고보조금 1,323억 7천 7백만원임
- 세출결산은, 예산액 2,655억 원에 지출액은 2,654억 2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치 않았으며 불용액은 9천 8백만원임

다. 기금

-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·재난대책기금(재해구호계정) 사회복지기금(기초생활보장